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상실됨.

이에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현 여건에 맞는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해당 없음.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현행 조례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66 팩스 : 02)3396-9055
- E-mail : moonsun1004@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미정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06 |
|----------|-----|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26일

발의자 : 조미정 의원 외 2명

(윤판오의원, 송재천의원)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상실됨.

이에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현 여건에 맞는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해당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다. 현행 조례 전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에 있어 의약품 기탁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팜뱅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팜뱅크(Pharm-Bank)”란 기탁자가 기탁한 의약품(이하 “기탁의약품”이라 한다)을 필요한 수요자에게 정보망을 갖춰 연결시키는 의약품 공급망을 말한다. <개정 2011. 6. 7.>
2. “기탁자”란 「약사법」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로서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 및 약국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11. 6. 7.>
3.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한약제제·의약외품을 말한다. <개정 2011. 6. 7.>
4. “수요자”란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4항 및 제44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로서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1. 6. 7.>
5.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6. 7.>
6. “지정기부방식”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에 따라 기탁자가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6. 7.>

제3조(팜뱅크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인터넷에 팜뱅크를 설치한다.

제4조(팜뱅크의 운영) ① 팜뱅크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신청받아 기탁 의약품을 인터넷상에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팜뱅크를 비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는 기탁 의약품을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보건소장이 기탁의약품을

거점도매상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전달한다.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팜뱅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탁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구청장은 기탁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탁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의 기증 (약국 잉여품은 3개월 이상)
2. 품질·외관·유통 등에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기탁
3. 기탁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탁일 전까지 최적조건하에서의 의약품 관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수요자의 의무) ① 수요자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탁 의약품의 보관도중 변질,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2. 기탁 의약품에 대한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리
3. 기탁 의약품의 사용도중 유통기한이 경과할 시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남은 의약품을 보건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약사법에 의거 자체 폐기
4. 기탁 의약품의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의약품이 목적 외로 사용되어 의약품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5. 의약품 신청시 의료지원시기 또는 기탁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산출한 후 의약품을 신청
6. 의약품 인수시 포장불량, 유통기한 상이, 그 밖에 외관상 이상이 나타난 경우 인수 후 1주일 내에 보건소장에게 회수요청 <개정 2011. 6. 7.>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제8조(세금의 감면) 기탁자는 지정기부방식에 의하여 기탁한 의약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자에게 기탁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탁 의약품의 가액산정) 제8조에 따라 기탁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기탁 의약품의 가액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6. 7.>

1. 제약회사 : 기탁 당시 거래되는 의약품의 출고가격

2. 약국개설자, 의약품도매상 : 기탁 당시 거래되는 의약품의 도매가격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팜뱅크 운영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064호,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